

전주지방법원 2015. 10. 30 선고 2014나9260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재판경과

전주지방법원 2015. 10. 30 선고 2014나9260 판결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. 9. 5 선고 2013가단50485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A

피고, 항소인B

변론종결 2015. 10. 2.

판결 선고 2015. 10. 30.

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. 9. 5. 선고 2013가단50485-1(추가판결)

주문

1.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가. 피고는 원고에게,

- 1) 11,002,1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8. 29.부터 2015. 10. 30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
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,
- 2) 2013. 8. 9.부터 익산시 C 전 358㎡를 인도하는 날까지 매월 428,474원씩을 지급하라.

나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11,231,2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 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3. 8. 9.부터 익산시 C 전 358m²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말일에 428,474원씩을 각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이 법원의 심판대상

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의 철거 및 그 토지 인도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, 제1심 법원은 2014. 8. 22. 원고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, 그 후 2015. 9. 5.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추가판결을 선고하였다. 이에 대하여 피고는 추가판결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,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 중 추가판결 부분에 한정된다(피고의 항소취지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기본판결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, 이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).

2.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존재

가. 인정사실

1) 원고는 2011. 4. 21.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34/334 지분을 증여받고, 2011. 5. 9.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2)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피고의 무허가 시멘트 벽돌조 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이

위치하고 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6호증의 각 기재, 제1심 감정인 D의 측량 감정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·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,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다.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

1)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피고가 아니라 E이므로,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. 살피건대, 피고가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건물이 피고의 소유임에 틀림이 없다고 진술하고, 제6회 변론기일에서도 2014. 7. 9.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하여 위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이 피고의 소유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(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피고가 익산시 G 대 372m² 지상에 허가받아 건축한 건물이라는 전제에서 그 소유자가 피고인 것처럼 잘못 진술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,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).

설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에 관한 피고의 자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,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,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피고가 관련 사건(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가단7064호)에서 이 사건 건물은 자신이 신축한 건물로서 피고 소유라는 취지의 확인서와 사실조회 회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,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.

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2)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여러 차례 분할, 지분경매 등을 통해 복잡한 권리 변동 과정을 거치는 30여 년간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소유 및 사용·수익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고, 원고도 이 사건

건물의 신축 당시 토지공유자였던 F의 아들로서 이 사건 건물의 내력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권리남용이라 함은, 권리가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인하여 사회적, 경제적으로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에게 과도한 손해를 입히는 결과가 됨에도 불구하고, 권리행사라는 구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우리의 통념상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권리의 사회적 기능을 무시하고, 신의성실의 원칙과 국민의 건전한 권리의식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(대법원 1991. 10. 25. 선고 91다27273 판결 등 참조).

그러나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가 원고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는 반면 피고에게는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다거나, 이에 따라 원고의 권리행사는 정당한 이익이 없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줄 의사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.

3. 부당이득의 반환범위

가. 인정사실

1) 원고가 지분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차임

① 2011. 5. 9. ~ 2012. 4. 20.까지: 6,314,298원{= (132,818,000원 × 348일/366일) × 0.05, 원 미만 버림, 이하 같다}

② 2012. 4. 21. ~ 2013. 4. 20.까지: 7,177,900원

③ 2013. 4. 21. ~ 2013. 8. 8.까지: 2,211,753원

2)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대한 차임

① 2011. 5. 9. ~ 2013. 8. 8.까지: 11,002,169원(= (6,314,298원 + 7,177,900원 + 2,211,753원) × 234/334)

② 2013. 8. 9. 이후 매월: 428,474원 [= {(2,211,753원 ÷ 110일) × 365일} ÷ 12개월 × 234/334]

[인정 근거] 추인되는 사실, 갑 제9호증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,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한 2011. 5. 9.부터 2013. 8. 8.까지 발생한 부당이득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인 11,002,16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변경 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. 8. 29.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. 10. 30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3. 8. 9.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매월 428,474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,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.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.

재판장판사김상곤

판사김송현

판사한진희